

—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·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4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4월 29일, 5월 25일

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김 창 호

나. 제안이유

-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근로자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며
-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(市)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(1). 일반현황

- 건립목적 :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 도모 및 근로복지 증진
- 위 치 : 구미시 공단동 256-18번지 외 3필지

- 규 모 : 부지5,762 m^2 , 건물4,607 m^2 (지하2층, 지상3층)
- 위탁 재산표시 : [별표] 참조
[기계실, 체육시설, 관리실, 사무실, 쉼터, 강의실, 부속실, 주차장, 공원 등]
- 건립시기 : 착공→1998. 9. 1 준공→2000. 5. 3
개장일 : 2000. 9. 1
- 위탁대상 : 토지, 건축물, 기계, 기구, 장비, 물품

(2). 위탁시기 및 범위

- 시 기 : 2005년 중
- 범 위
 -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시설 및 관리·운영 전반
 -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스포츠 시설 개선 및 증설(수탁자 부담)

(3). 위탁비용 등

- 위탁 비용 : 2004년 예산집행실적 및 2005년 예산
- 위탁비산정 : 구미시와 수탁기관과 협의 및 원가계산 전문기관의
용역에 의한 가격

(4). 수탁기관 : 시설관리공단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
-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

-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4조
- 근로자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사용 및 시설물 기부채납에 관한 합의서 제3조 제2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본 동의안은 시조직을 저비용·고효율화 하려는 시스템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향상과 시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·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서
-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사무위임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볼 수 있으며
- 시직영으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시설의 관리·운영기법의 경직화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의 활용도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음
- 민간 위탁시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경영 성과가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처가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부지의 소유자인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,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전문시설의 기능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제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
-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소요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

- 아울러 부실한 운영관리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